성남 YMCA LH스포츠센터 체육관 대관 규정

1. 시설사용단체(자)는 공고를 통한 사전 심사후 사용시설허가신청이 가능하다.
2. 휴일 및 공휴일의 시설사용시간은 06:00~24:00 범위 내로 한다.
   *단, 센터에서 정하는 휴관, 휴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.
3. 체육관 시설사용은 센터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센터 실무자와 협의한다.
4. 시설사용시간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, 정시 시작과 50분 종료를 지켜야한다. 특히 대관 전 후에 진행되는 수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.
5. 시설사용료는 아래의 기준에 적용한다.

시설사용인원	성남 YMCA 체육관 시설사용 금액	비고
50명이하	1시간 기준-102,000원	청소년 단체 30% 할인 (공문 필요)
50명 이상	1시간 기준-180,000원	
부대시설	마이크 앰프 사용별도 50,000원	

6. 시설사용료와 부대 사용료는 행사 일주일 전까지 당 센터의 계좌로 입금한다.
   예금주 : 성남기독교청년회분당 국민은행 : 699201-01-000439
   * 시설사용료 입금은 전월 20일까지 입금을 완료한다.
7. 신청단체(자)는 당 센터 소정양식 시설사용신청서와 서약서에 기록한 행사 목적과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한다.
8. 신청단체(자)는 체육관 출입 시 반드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한다.(구두금지)
9. 신청단체(자)는 사전에 허가된 체육관의 부속시설이나 비품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, 사용 후에 원상태로 정리정돈 해야 한다. 아울러 사용에 따른 시설물, 비품의 훼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신청단체(자)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10.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단체(자)가 한다.
11. 시설사용기간 중 당사의 중요한 행사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12. 대관단체(자)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당일 센터의 당직 책임자가 대관을 중지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.
13. 시설사용허가를 득한 단체(자)는 성남YMCA 목적사업에 후원을 하며 연 1회 30만원의 후원금을 지불한다.(기부금 명세서 확인 가능)
14. 성남YMCA 회원확장운동으로 시설사용인원 1인 1만원의 회원가입신청을 받는다. (♣ 성남YMCA LH 스포츠센터 연간회비 면제)
15. 대관단체(자)가 대관을 해약코자 할 때 행사개최 7일전 까지는 그 사유를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대관료 총액의 5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답토록 한다.